

개혁종단의 징계에 대한 율장적 검토

이자랑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교수

jaranglee@hanmail.net

I. 서론

II. 4.10승려대회와 단사인제도

III. 궐석심판과 현전비니

IV. 체탈도첩과 멸빈

V. 결론

요약문

본 논문은 1994년에 등장한 개혁종단이 기존 세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을 율장에 비추어 재고한 것이다. 당시의 개혁은 종단 운영의 부패와 정치권력과의 유착, 낡은 행정제도 등의 혁신을 목표로 교단의 개혁을 갈망하는 사부대중의 강렬한 열망이 일구어낸, 근현대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개혁 과정에서 승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이념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후 많은 후유증을 양산하였다. 특히 당시 개혁종단을 지지하지 않는 일부 승려들에 대한 성급하고도 가혹한 징계는 지금까지도 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며 갈등을 낳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게다가 당시의 징계 방법은 조계종의 현 중헌·중범에도 잔존하고 있거나, 혹은 중도들의 의식 속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 재발의 가능성도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94년 개혁종단의 징계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율장의 규정에 비추어 검토한다. 첫째,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의 주도 하에 1994년 4월 10일에 열린 전국승려대회이다. 승려대회는 초법적인 권위를 가진 대회

로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며 근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94년 당시에도 개혁종단 성립의 일등공신이다. 둘째, 궤석심판의 문제이다. 개혁종단은 당시 반대 세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렸다. 셋째, 체탈도첩(멸빈)이다. 당시 총 5명의 승려에게 체탈도첩이라는 중벌이 내려졌다. 이는 승려라는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벌로 비구·비구니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이다. 이 세 가지 사안이 어떤 문제점을 각각 내포하고 있는지 울장의 멸쟁법(滅諍法)에 비추어 검토하고, 나아가 개선 방향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4.10승려대회, 단사인제도, 궤석심판, 현전비니, 체탈도첩, 멸빈, 개혁종단

I. 서론

1994년 개혁종단이 등장한 지 어느덧 25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의 개혁은 종단 운영의 부패와 정치권력과의 유착, 낡은 행정제도 등의 혁신을 목표로 교단의 개혁을 갈망하는 사부대중의 강렬한 열망이 일구어낸, 근현대 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개혁 과정에서 승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이념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후 많은 후유증을 양산하였다. 특히 당시 개혁종단을 지지하지 않았던 일부 승려들에 대한 성급하고도 가혹한 징계는 지금까지도 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며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94년 개혁종단의 징계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재고하며 향후 개선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덕산이 「조계종의 징계제도와 그 문제점」에서 다룬 적이 있으며,¹⁾ 조계종 중법에 나타난 징계제도와 울장과의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 검토 역시 여러 편의 논문에서 이루어져 왔다.²⁾ 따라서 주제 상 중복되는 점이 없지

1) 덕산 2011, 297-346.

2) 관련 연구를 연대순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자량 2010, 223-253; 차차석 2012, 201-226; 손성우(덕문) 2013, 43-77 등.

않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94년 개혁종단의 징계와 관련하여 핵심적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점을 빨리올 및 그 주석에 비추어 비교 분석한다.³⁾

첫째, 개혁종단의 주체인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이하 ‘범승추’로 약칭)의 주도 하에 1994년 4월 10일에 열린 전국승려대회(이하 ‘4.10승려대회’로 약칭)이다. 초법적인 권위를 가진 대회로서 암묵적으로 허용되며 근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94년 당시에도 개혁종단 성립의 일등공신이다. 전원출석과 만장일치라는, 갈마 실행의 주요 2대 원칙이 실현된 대회로서 승가의 전통 의사 결정 방식인 갈마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둘째, 권력심판의 문제이다. 개혁종단은 당시 반대 세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율장에 규정된 멸쟁법 규정에 심각하게 상치한다.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의 자백과 사실 유무의 확인 없이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 셋째, 체탈도첩(멸빈)이다. 당시 총 5명의 승려에게 체탈도첩이라는 중벌이 내려졌다. 이는 비구·비구니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로 율장에서는 승려로서의 신분 박탈과 더불어 재출가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율장에서는 매우 한정된 범제 사안에 대해서만 이 징벌을 부과한다. 개혁종단의 체탈도첩 사례를 율장의 사례와 비교하며 그 문제점을 고찰한다.

II. 4.10승려대회와 단사인제도

개혁회의가 출범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4년 4월 10일 조계사에서 열린 4.10승려대회이다. 4.10승려대회의 의의나 전후 사정, 재평가의 필요성 등에

3) 대한불교조계종 중헌 제9조 ①항에서는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http://elaw.buddhism.or.kr/jsp/lkms3/jsp/regulation/regulationMain.jsp>). 구족계의 수지를 조계종 승려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 거론하고 있으므로, 승가의 징계 역시 구족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구족계의 滅諍 방법과 개혁종단의 징계 내용을 비교해 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해서는 이미 관련 논문이나 자료가 발표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4.10승려대회를 비롯하여 기존에 초법적 권위를 부여해 온 ‘승려대회’가 울장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다.

먼저 4.10승려대회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대회의 주체는 범종추였다. 94년 3월 23일에 불교계의 8개 단체(실천불교 전국승가회·선우도량·중앙승가대 학생회·동국대 석림동문회·전국승가대 학인연합·동국대 석림동문회·동국대 동림동문회·중앙승가대 동문회)가 모여 형성한 단체로, 주로 진보 성향의 소장승려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보인다.⁴⁾ 범종추는 상무대비리와 동화사 대불 80억 비자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서의현 원장의 3선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3월 26일부터 ‘중단개혁을 위한 구종법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편 대중의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의현 원장은 3월 29일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무리하게 사태 진압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5시에 서암 중정이 “30일 종회를 보류하고 원로 중진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중단개혁을 이루라”는 교시를 내렸지만, 이튿날 제112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서 원장은 제27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폭력배 동원 및 경찰력의 비호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범종추의 개혁 운동 쪽으로 기울어갔다. 많은 사부대중이 지지 의사를 밝혔고, 4월 5일에 범종추는 전국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의 개최를 결의하게 된다. 그리고 4월 10일 드디어 조계사에서 승려대회가 개최되었다. 『94년 중단개혁 백서』(이하 『백서』로 표기)에 의하면, 당시 대회에는 서의현 원장의 불신임과 즉각 퇴임 등을 요구하며 2,500여명의 승려와 1,000명의 재가불자가 참가하였다고 한다.⁵⁾ 이는 승려대회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승려대회의 연원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으며, 근현대

4) 조기룡 2018, 14.

5)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2016, 149-150. (이하, 『백서』로 약칭)

한국불교사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 비해 관련 연구도 적다.⁶⁾ 그 중 근현대불교사에서 발생한 승려대회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승려대회는 1922년 1월에 열린 ‘불교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회나 열렸다고 한다.⁷⁾ 구체적인 개최 이유나 주도 세력 등은 제각각이지만, 한국불교의 모순이나 타락 등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략 일치한다. 그런데 승려대회는 조계종의 『종단 법령집』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흔히 말하듯이 승려대회는 중현·종법을 초월하여 ‘초법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승려대회의 초법적인 권위는 무엇을 근거로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다음 인용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승려대회란 ① 모든 승려들이 한 곳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오랜 佛家의 전통이다. 승려대회에 참가하는 승려들은 僧臘(출가했수)과 관계없이 발언과 의결권에서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산중공사로 불리는 승려대회는 중현·종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통을 중시하는 불교계에서는 ② 초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산중공사는 만장일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③ 어느 한 쪽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④ 그런 까닭에 만장일치가 도출될 때까지 무기한 산중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전통이다.⁸⁾

이는 김순석의 논문에 나오는 승려대회에 관한 설명으로, 현재로서는 승려대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유일한 부분인 것 같다.

위의 글에서 승려대회는 산중공사에, 산중공사는 ‘갈마(羯磨)’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승려대회→산중공사→갈마라는 이해에 근거하여 승려대회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정말 승려대회=산중공사=갈마라고 볼 수 있

6) 덕산 2005, 175-324; 김광식 2005, 141-172 정도가 있을 뿐이다.

7) 김광식 2005, 143-168.

8) 김순석 2013, 336-337.

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일단 이 문제는 차치하고 위의 설명대로 만약 승려대회를 승가의 전통적인 의견 도출 방법인 갈마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 4.10승려대회는 갈마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고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만약 위 인용문이 갈마의 일반적인 특징을 묘사한 것이라면 내용상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갈마의 중요한 특징들을 잘 선별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4.10승려대회가 여기서 묘사한 갈마의 조건을 충족시켰는가 하는 시각에서 되짚어보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위 인용문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① ‘모든 승려들이 한 곳에 모여’, ② ‘초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③ ‘어느 한 쪽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세 문장을 보자. 이 세 문장은 하나의 구절 때문에 모두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그것은 ‘모든 승려들이’라는 구절이다. ①②③을 종합해보면 “[승려대회] 모든 승려가 한 곳에 모여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초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승려대회가 초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모든 승려가 한 곳에 모여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율장에서 말하는 갈마 성립의 원칙과 상통한다. 하지만, 위의 글에서 말하는 ‘모든 승려’란 누구인가? 이 논문의 논지에 따르면 그것은 4.10승려대회에 참석한 승려들이다. 4.10승려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원 동의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초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이해이다.

율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왜 이 점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당시 승려대회에 참석한 것은 분쟁 중인 양측 가운데 한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승려라고 하지만, 그것은 당시 서 원장의 3선 연임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된 모임이었다. 대립 중인 양측 가운데 한 쪽만 모였다는 것도 문제이며, 이들이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대(大) 승가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4.10승려대회가 당시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독재 권력에 의한 갈등과 대립, 불교의 정치 예측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부대중의 깊은 공감대에 근거하여 열렸다

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3선을 감행하고 나아가 폭력배 동원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서 원장 측의 행보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모임과 거기서 내려진 결정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추후 갈등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도 분란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승려대회 후에 종단은 돌이킬 수 없는 폭력과 상처로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추락했으며, 현재까지도 승가 내에서 불화가 진행 중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율장에서 주목해야 할 규정은 ‘현전비니(現前毘尼, sammukhāvinaya)’라 불리는 멸쟁법(滅諍法)이다. 멸쟁법이란 승가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빨리울을 비롯한 한역 제율(諸律)의 「멸쟁건도」에서 다루어진다. 이 건도에서는 승가에서 발생하는 쟁사를 4종(言諍·覓諍·犯諍·事諍)으로 나눈 후, 쟁사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멸쟁법으로 7종을 든다. 7종의 멸쟁법이란 현전비니·억념비니(憶念毘尼, sativinaya)·불치비니(不癡毘尼, amūlavinaya)·자언치(自言治, paṭiññā)·다인어(多人語, yebhuyyasikā)·떡죄상(覓罪相, tassapāpiyyasikā)·여초부지(如草覆地, tiṇavatthāraka)이다.⁹⁾ 이 중 현전비니는 가장 기본적인 멸쟁법이다. 칠멸쟁법 중 하나로 독립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멸쟁법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요컨대, 어떤 내용의 멸쟁갈마이든 현전비니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멸쟁법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만큼 현전비니는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이 현전비니를 성립시키는 조건이 바로 승가(僧伽, saṃgha)·법(法, dharma)·율(律, vinaya)·사람(人, puḍgala)의 네 가지이다.¹⁰⁾ 이 중 ‘승가’란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해결을 도모하는 주체를 말한다.

9) 이들 칠멸쟁법은 각 율의 「멸쟁건도」에서 다루고 있다. 빨리울 『Adhikaraṇasamathākkhandhaka』 (Vin. II, 73-104); 『사분율』(T1428, 22: 913c18-922c5); 『오분율』(T1421, 22: 153c2-156b18); 『십송률』(T1435, 23: 251a20-256b22) 등.

10) Vin. II, 93.32-94.5. 이 네 가지 조건에 관해서는 최근에 출판된 靑野道彦 2020, 73-82에서 주석의 내용도 고려하며 상세히 연구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현전승가에 속하는 ‘모든 승려’가 바로 이 ‘승가’에 해당한다. 모두 동의하면 안건은 통과하는 것이고, 이의가 제기되면 다른 방법으로 멸쟁을 시도하게 된다. 한편 ‘법’과 ‘율’이란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에 근거하여 멸쟁을 시도하는 것, ‘사람’이란 분쟁 중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멸쟁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원고·피고를 포함한 승가의 구성원이 전원 출석한 자리에서 법과 율에 근거하여 멸쟁이 이루어질 때 그 갈마의 결과는 유효하다는 것이 율장의 입장이다.

94년에 시행된 승가대회를 현전비니 규정에 비추어 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승가대회는 서 원장의 3선 연임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모임이었다. 하지만, 현전비니의 ‘승가’라는 조건은 사안이 발생한 동일한 경계 안의 승려들이 한 자리에 모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대로라면 94년 사태의 경우 조계종단 전체가 관련된 사안이므로 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현전승가를 구성할 수 있을 리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율장 「칠백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붓다 열반 후 100여 년 경에 웨살리(Vesālī)에서 발생한 십사(十事) 사건 및 제2 결집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건도이다. 이 건도에 의하면, 웨살리의 한 승원에서 왓지족 출신의 비구들이 금은 수납을 비롯하여 율에 어긋나는 10가지 행위를 합법이라 주장하며 실천하고 있었는데, 유행 길에 이 승원에 머물게 된 야사(Yasa)라는 비구는 그 행위를 보고 경악한다. 범계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가신자들의 신심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거죄(擧罪)갈마를 받자, 야사는 그 승원을 빠져나와 각지로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도 장로들을 찾아가서 십사 문제를 알리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인도 각지로부터 야사를 지지하는 비구들이 웨살리로 몰려들었다. 엄청난 숫자의 비구들이 몰려들면서 당시 불교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이에 교단에서 존경받고 있던 레와따(Revata)라는 장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중에게 고지하며 「멸쟁건도」에 규정된 ‘단사인(ubbāhika, 斷事人)’ 제도로 멸쟁을 시도할 것을 갈마 형식으로 제안한다.¹¹⁾

바로 이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사인 제도란 승가를 대표하여 십사 문제를 검토하고 쟁사를 가라앉힐 수 있는 승려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레와파의 제안에 대중이 동의하자 왓지족 출신의 비구들을 지지하는 쪽에서 4명, 야사를 지지하는 쪽에서 4명의 총 8명의 비구들이 모여 십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거의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와 더불어 웨살리에 모여든 모든 승려들에게 공지하며 찬반 여부를 확인하였다.¹²⁾ 요컨대 십사 문제를 둘러싼 의견의 대립으로 인한 승가의 혼란을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일임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대중들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런 방식을 취한 이유는 십사가 율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율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근거를 확인하며 정확히 검토할 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¹³⁾ 십사가 비법이라 생각하며 많은 자들이 모여들었다 해도, 실제로 십사가 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함께 온 비구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왜 십사가 허용될 수 없는지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십사가 비법

11) 이 일련의 과정에 관해서는 Vin. II, 294.1-308.7; 『사분율』(T1428, 22: 968c17-971c3) 및 제 율의 「칠백견도」를 참조. 제2결집의 쟁사 해결 방법에 관해서는 이자랑 2018, 131-160을 참조.

12) 이 단사인제도는 모든 쟁사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쟁(言諍)’에만 사용할 수 있다. 언쟁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비구들 간에 발생하는 다툼으로 내용상으로는 18사가 된다. 십사 논쟁의 경우 왓지족 출신의 비구들이 실행하고 있던 열 가지 행위가 율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언쟁에 해당한다. 붓다가 설한 율과 관련된 쟁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94년 사태는 승가의 쟁사 중 어떤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이미 덕산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사태의 발단이 선거 시기를 둘러싼 절차에 관한 이견과 3선 반대 및 상무대 80억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촉발되면서 점차 정치적인 문제까지 비화된 매우 복잡한 성격의 쟁사였기 때문이다(덕산 2005, 202-204). 다만 94년 사태의 핵심 안건이 총무원장의 선거와 관련한 ‘중입’이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쟁의 범위로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단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 앞서 인용한 김순석의 글에서 “승려대회에 참가하는 승려들은 僇臚(출가했수)과 관계없이 발언과 의결권에서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율장에서 제시하는 갈마의 진행 방법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정정이 필요하다. 즉, 갈마는 한 자리에 모인 승려들이 너도나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며 의견을 조정해가는 것이 아닌, 갈마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반대 의견을 가진 자는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십사를 여법이라 주장하는 측을 무리 없이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대중들도 보다 명확하게 십사를 반대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쟁사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울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실천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요컨대, 갈마는 승가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여법의 기준을 확인하며 승가의 구성원을 지도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법과 울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여부의 확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승려’의 만장일치가 가능하며, 또한 화합도 가능하게 된다.

현전비니의 ‘승가’라는 조건은 이러한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다. 승려대회를 주최한 측을 비롯하여 불교계에서 승가의 다툼은 반드시 멸쟁법에 의해 해결한다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 싶다. 여하튼 이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승려대회는 불교의 전통적인 의사 결정 방법인 갈마에서 연원을 찾아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인도 각지에서 웨살리로 많은 승려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그 만큼 십사가 비법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자신들끼리 갈마를 개최하고 십사 비법의 결론을 내렸다고 하자. 십사를 실천하고 있던 왓지족 출신의 비구들이나 이에 동조하는 비구들은 과연 그 결정에 순응할 수 있을까? 94년 사태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승가에서 발생한, 말하자면 승려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서 원장의 3선 시도 등을 비롯하여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은 십사 문제와 달리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첨예한 입장에서 갈등이 폭발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난무하는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종단을 대표하는 서암 종정이 “원로회의와 종회, 집행부 및 범종추 대표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4월 10일의 승려대회는 금지한다.”는 교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승가 안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갈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죄를 지었다고 지적받은 사람도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도 모두 ‘승가’의 구성원이다. 승가의 구성원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로

지 ‘승가’이다. 그리고 그 승가란 바로 승가의 ‘모든’ 구성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갈마의 주체인 ‘승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바로 이 점에 있다. 이 승가가 일방적으로 구성된다면 분열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모든 비구를 동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대표하는 비구를 선발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근현대 불교사에서 열린 승려대회를 검토한 후 김광식은 승려대표자 중심의 대회로 개최되었던 초창기의 승려대회에 비해 근년에는 점차 전체 대중승려들이 모두 참가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는 승려대회에 참가하는 대중들의 인원 동원 및 세 몰이형의 과시를 동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⁴⁾ 이는 중요한 지적이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익숙한 우리는 다수의 선택에 따르는 상황에 익숙하지만, 율장에서는 결코 ‘다수’를 ‘여법(如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¹⁵⁾ 여법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승려대회에 초법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는 누구나 가능하며, 또한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정확한 확인 절차와 원칙에 따른 해결,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의 설득 내지 동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최 요건을 비롯하여 차후의 해결 방법에 이르기까지 승려대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종단 법령집에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 상황이 종단에 발생했을 때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옹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단사인과 같은 판정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들은 어떤 방법과 기준에 근거하여 사안을 검토할 것인가, 승가의 구성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결정 사항을 알리며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등등,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종단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형태의 승려대회로 진화할지 알 수 없다. 필시 세 몰이를 통한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려대

14) 김광식 2005, 169. 94년 이후 98년과 99년에도 94년 종단개혁의 주체들에 의해 승려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서로가 자신들이 주최한 승려대회의 참가자가 많았다고 세 과시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같은 논문, 167.

15) 이자량 2012, 1-41.

회의 개최는 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지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다.

III. 궤석심판과 현전비니

94년 개혁 과정을 올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부분은 ‘궤석심판’을 비롯한 징계 절차의 문제이다. 『백서』 제3부 개혁회의의 운영과정 중 제3장 ‘인적 청산 과정’을 보면, 인적 청산의 원칙 및 서의현(황용) 전 원장의 징계과정, 해종 행위자들의 징계과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불교신문> 등에 초심호계위원장 명의로 기고된 징계의 3대 원칙을 보면 해종 행위가 뚜렷하여 개혁종단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에는 중징계, 해종 행위에 가담했지만 일정부분 개정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공직에 욕심을 가지고 반개혁 쪽에 선 중도는 중징계의 원안에서 일정부분만 반영, 해종 행위에 대한 책임을 깨끗이 통감하고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 근신과 참회를 표방하는 중도에게는 관용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배려하여 징계를 최대한 가볍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⁶⁾ 개혁종단의 명분 확보에 중점을 둔 원칙으로, 이를 위협하는 인물이나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개혁회의의 성립 과정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만, 승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적어도 승려의 근신이나 참회 혹은 승가 화합 등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백서』에 제시된 서의현을 비롯한 8명 승려들의 징계과정을 간단하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6) <불교신문> 1994.7.1.일자. 『백서』 2016, 221에서 재인용.

94년 5월 12일자 등원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최보선

해당 등원 일시(서의현의 경우 94년 5월 25일)까지 등원하지 않으면 총무원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징계에 회부하겠다.

(총 20명 비구의 성명과 법명, 승려번호, 등원 일시를 제시하고 있다.)

94년 6월 1일자 초심 호계위원회 개최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위원회 초심위원장 이청화

94년 6월 8일 14시 불교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16회 초심호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과 증언을 하라. 본 심의에 불참할 시에는 호계원법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그대로 의결 처리한다. (총 11명 비구의 성명과 법명을 제시하고 있다.)

94년 6월 8일자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위원회 초심위원장 이청화

94년 6월 8일에 개최된 제16회 초심호계위원회 결의사항을 동봉하니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94년 6월 23일까지 재심을 신청하라.

(8명의 비구 중 의현·규필·보일·원두·무성 5명은 체탈도첩, 도각·종원·보정 3명은 제적을 공고하고 있다.)

94년 6월 23일자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위원회 재심위원장 오고산

94년 6월 29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제14회 재심호계위원회에서 재심 신청건을 심의하니 해당승려는 참석하여 변명과 증언을 해 달라. 단, 본 통보에 불응할 시에는 호계위원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그대로 의결한다.¹⁷⁾

이후 6월 29일자로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이청화, 위원 철우·수경·주영·혜국) 이름의 ‘초심징계결의서’가 확정된다. 내용은 서황용(의현)에 대한 체탈도첩의 징계 확정이다. 그리고 7월 1일자 불교신문에 의현을 비롯한 다른 5명

17) 『백서』 2016, 223.

(규필·보일·원두·무성은 체탈도첩, 보정은 제적)에 대한 징계확정공고가 이루어진다.¹⁸⁾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징계는 5월 12일에 시작하여 6월 29일까지, 불과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안에 끝나고 있다. ‘체탈도첩’ ‘제적’ 등의 중징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빠른 조치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조항, 즉 총무원법 제17조 2항, 호계원법 제14조 2항의 내용이다. ‘꺾석심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혁회의의 징계 절차를 올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먼저 두 조항의 내용을 보자.

총무원법 제17조 2항¹⁹⁾ (호법부 총무원의 업무)

② 등원 또는 출석 요구는 최대 3회까지 하며, 3회까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제소자가 주소 불명인 경우 3회의 출석 요구 후 총무원 게시판과 종단 기관지에 1회의 등원공고를 함으로써 등원요구 절차를 완료한다. [불기 2539(1995). 3. 29 개정]

호계원법 제14조 2항²⁰⁾

(본인출석의 원칙) 호계원의 심리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그대로 의결 처리할 수 있다. [불기 2539(1995). 3. 29 개정]

이들 규정에서는 최대 3회까지 등원 내지 출석 요구를 하는데, 만약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않을 때는 제소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한다. 『백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며 “서 전

18) 『백서』 2016, 225-227.

19) 이 조항은 그 후 개정 과정을 거쳐, 현행 종령집에서는 총무원법 제20조 ②항이다. 내용은 같다. <http://elaw.buddhism.or.kr/jsp/lkms3/jsp/regulation/regulationMain.jsp>

20) 이 조항도 그 후 개정 과정을 거쳐, 현행 종령집에서는 호계원법 제11조이다. [불기 2539(1995). 3. 29 개정] <http://elaw.buddhism.or.kr/jsp/lkms3/jsp/regulation/regulationMain.jsp>

원장은 호법부의 등원공고, 초심호계위원회의 등원공고, 그리고 재심호계위원회의 등원공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포기함으로써 종단의 사법적 심판 절차로는 완전한 체탈도첩이 확정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²¹⁾ 호법부→초심호계위원회→재심호계위원회를 거치며 3회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탈도첩이 확정된 것이다. 이는 율장의 멸쟁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멸쟁법 중 하나이자 다른 멸쟁법의 기본 성립요건이 되는 현전비니의 네 조건 중 하나는 ‘사람[人, pudgala]’이다. 즉 원고와 피고가 멸쟁갈마를 하는 자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빨리울 「멸쟁건도」 첫 머리에서는 육군비구가 불현전(不現前), 즉 앞에 없는 비구들을 대상으로 각종 갈마를 실행하여 징계하자 붓다가 이를 꾸짖으며 금지하는 내용이 나온다.²²⁾ 또한 육군비구가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데 고절(苦切) 등의 징벌갈마를 실행하자 붓다가 꾸짖으며 금지하는 내용도 나온다.²³⁾ 즉, 반드시 문제의 당사자를 갈마를 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고 본인의 자백을 받은 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의 자백은 칠멸쟁법 중 하나인 ‘자언치’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이다. 자언치란 승가의 쟁사 가운데 ‘범쟁(犯諍, āpatti-adhikaraṇa)’, 즉 오편칠취(五篇七聚)를 거쳐서 발생한 쟁사를 가라앉힐 때 사용되는 멸쟁법이다. 이 멸쟁법에 의하면, 본인의 자백 없이 징벌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갈마건도」에서는 ‘문책한다(codeti)→기억하게 한다(sāreti)→죄를 결정한다(āpattiṃ ropeti)’의 순서를 지켜 백사갈마로 징벌갈마를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주석에 의하면, 이때 ‘문책한다’란 갈마를 하는 장소에 피고를 참석시킨 후 문책을 할 때 “‘저희들은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라며 발언의 기회를 구하여 [일으킨] 사항(vatthu)과 [저지른] 죄(patti)에 의해 문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²⁵⁾

21) 『백서』 2016, 228.

22) Vin. II, 73.1-20; 『사분율』(T1428, 22: 913c19-914a4)에도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다.

23) Vin. II, 83.10-21.

24) Vin. II, 2.18-23.

25) Smp. III, 624.8-9.

요컨대 당신이 왜 이 자리에 불려나왔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이어 자백(*paṭiñṇā*)에 근거하여 기억해내게 한 후 죄를 결정한다(*āpattim ropeti*). 본인이 생각하는 범계의 내용과 승가가 생각하는 범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일치하는 내용으로 죄목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자백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자들의 목격 정보도 유효하다. 즉, 범계자라고 고발 당하게 되면 승가가 본인이 출석한 자리에서 고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자신 혹은 다른 비구들의 증언을 동반한 후 자백을 얻어낸 후 죄를 확정하는 것이다. 피문책자에게 문책하지 않고 집행된, 혹은 당사자의 자백 없이 집행된 갈마에서 내려진 결정은 효력이 없다.²⁶⁾

이처럼 울장에서는 당사자의 출석과 자백을 근거로 징계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멸쟁법’의 원칙으로 중시한다. 이 두 조건, 즉 ‘반드시 당사자를 참석시켜 갈마를 할 것’과 ‘반드시 당사자의 자백에 근거하여 징계를 결정할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법에 반하는 갈마(*adhammakamma*)’ 혹은 ‘율에 반하는 갈마(*avinayakamma*)’이며, 결정된 내용은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멸쟁은 ‘쟁사의 소멸’ 즉 ‘아디까라나 사마타(*adhikaraṇa-samatha*)’라는 원어의 한역으로 쟁사를 가라앉히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인의 인정 없이 이루어지는 징계는 ‘일방적인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사자의 납득과 진정한 참회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리고 참회가 없다면 당연히 이후 복죄(服罪) 과정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구성원 간에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런 울장의 원칙과 관련하여 ‘등원 공고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94년 징계 과정에서는 등원 공고를 했지만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 체탈도 첩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지금도 호계원법 제29조 ①항(본인 출석의 원칙)에서는 “당사자는 초심호계원의 심리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

26) Smp. VI, 1155.12-15.

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²⁷⁾라고 하여 궐석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등원 공고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 중단 운영상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궐석심판이 승가회합과 관련하여 이후 불리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원장 덕분이 201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주목된다. 그는 율장의 규정과 달리 궐석심판을 용인하는 호계원의 심판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언급하며, 당사자가 종적을 감추어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없이 징계를 확정해 버리기 보다는 2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정지 상태가 지속되게 하고, 승려 신분상의 모든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에 대해 인식하게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²⁸⁾ 또한 미리 이런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피해에 대해 구족계산림이나 각종 고시산림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²⁹⁾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승가가 회합을 중시하고 참회를 기반으로 구성원이 청정을 유지하며 수행에 힘쓰는 성격의 공동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의 인정 없이 징계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율장에서는 당사자의 범계 인정과 참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친한 한 두 명의 비구 → 여러 명의 동료 비구 → 승단에 의한 갈마 등 세 네 번에 걸친 설득 내지 간고(諫告)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³⁰⁾ 현재 조계종단은 문중중심의 사형사제 의식이 강하므로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하기 전에 주변 비구들에 의한 출석 권유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현대의 승가는 발생하는 쟁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발생 횟수도 많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호계원의 심리를 삼심으로 하여 교구본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과 이후 재심,

27) <http://elaw.buddhism.or.kr/jsp/lkms3/jsp/regulation/regulationMain.jsp>

28) 손성우(덕문) 2013, 63.

29) 손성우(덕문) 2013, 59-60.

30) 이자량 2003, 201-203.

삼심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각각 구분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³¹⁾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체탈도첩과 멸빈

94년 중단개혁의 징계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 주요한 문제점은 ‘체탈도첩’이라는 징계이다.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7월 1일자 불교신문에는 서의현을 비롯한 다른 5명(규필·보일·원두·무성은 체탈도첩, 보정은 제적)에 대한 징계확정공고가 이루어졌다.³²⁾ 보정을 제외한 총 5명이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고 있다.³³⁾ 체탈도첩에 대해서는 한국불교사에서의 발전 과정을 고려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멸빈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현종헌 제23장 포상 및 징계 제127조 1항에서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죄로 멸빈을 언급하며 “멸빈: 급부한 승려증을 박탈하고 승적을 말소하여 절 밖으로 빈척한다(치탈도첩).”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⁴⁾

먼저 94년 당시 5명의 승려가 무엇을 근거로 치탈도첩 당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관련 기사에 의하면, 개혁회의는 5월 3일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법’을 첫 안건으로 처리하고 의현 총무원장 체재를 비호한 승려들에 대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5월 4일에는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해종특위)가 구성되고, 5월 8일에는 활동방향에 대한 기본골격을 마련하였다. 해종특위는 대구 동화사를 비롯해 총 30개 사찰을 특별총무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약 두 달간의 조사를 통해 143명을 해종행위자로 지목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단순가

31) 손성우(덕문) 2013, 52-53.

32) 『백서』 2016, 227.

33) 이 외에도 종원, 진경, 준계, 진암 등 94년 사태와 관련하여 총 9명의 승려가 체탈도첩된 것으로 보인다.

34) 또한 승려법 제45조에서는 멸빈을 셋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나. 사찰에서 빈척하고 다. 복적 또는 재득 도할 수 없다.” (<http://elaw.buddhism.or.kr/jsp/lkms3/jsp/regulation/regulationMain.jsp>)

답자와 적극가담자, 중단음해자로 나누고 단순가담자는 경징계를, 적극가담자와 중단 음해자는 중징계의 방침을 정한다. 이런 분류에 근거하여 해종특위는 전체 143명 가운데 74명을 호계위원회에 징계 회부했는데, 짧은 조사기간 동안 자의적으로 죄의 경중이 판단되면서 중단개혁 직후 조계종은 수많은 소송에 휩싸이게 된다. 94년 6월 8일에는 개혁회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초심호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해종특위와 호법부의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의현을 비롯한 규필, 보일, 원두, 무성에게 체탈도첩을 결정한다.³⁵⁾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체탈도첩의 징계는 개혁회의가 구성한 초심호계위원회에서 개혁회의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의현 총무원장의 3선을 적극 지지하여 징계에 회부되었던 일부 승려들이 유사한 사안임에도 ‘문서견책’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³⁶⁾ 당시 호계위원을 맡았다가 물러난 철우는 “아무리 의현 총무원장의 편에서 있던 사람이라도 징계는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훗날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호계위원회의 판결은 마치 ‘인민재판’을 연상케 했다. 절차와 원칙도 없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당시를 슬회하였다고 한다.³⁷⁾ 호계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철우의 의견이나 징계 과정을 보면, 당시의 징계가 단기간에 다소 무리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율장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부 승려들에게 내려진 체탈도첩이라는 징벌이다. 체탈도첩은 승려에게 내려지는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승려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징벌이다. 당시의 징계결의서를 보면, 초심호계원은 의현 총무원장에게는 ‘중단과 승려의 명예 훼손, 총무원장으로서 의무·금지 규정 위반, 폭력배 동원, 파행적 총무행정’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규필에게는 ‘3월 29일 은해사 말사 주지 수십 명을 동원해 개혁에 항거, 3월

35) 「법보신문」 「권오영 기자의 조계종 개혁 20주년」 28. 해종행위자 징계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54>)

36) 앞의 각주 35) 참조.

37) 앞의 각주 35) 참조.

30일 의현 총무원장 3선에 적극 가담, 해종특위 감사 거부 등에 대한 책임'을, 원두에게는 '석명서(釋名書) 등을 통해 개혁회의 집행부를 비방, 제10대 중앙종회 해산은 무효라며 개혁중단 부정, 4월 13일 원로회의를 불법회의로 주장, 서울 민사지법에 개혁회의법 제정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등을 적용하였다.³⁸⁾ 이들 외에 체탈도첩을 당한 다른 승려들도 개혁에 항거하거나 개혁회의의 집행부를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체탈도첩을 당하고 있다.

이 체탈도첩은 울장의 징벌 체계로 말하자면 멸빈에 해당한다. 현 조계종 법령에서도 멸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³⁹⁾ 멸빈은 나사나(nāsanā)라는 말의 한역으로, 나사나는 파괴하다, 소멸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nās라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따라서 나사나, 즉 멸빈은 '완전한 소멸, 파괴' 등을 의미한다. 산산이 부서져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멸빈은 곧 비구 혹은 비구니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징벌이다. 멸빈당한 자는 출가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재출가는 불가능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울장에서는 어떤 죄에 대해 멸빈이라는 징벌을 부과하는 것일까? 선행 연구에 의하면, 비구에게 멸빈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뿐이다.⁴⁰⁾ 첫째, 차법(遮法, antarāyikā dhammā)에 저촉하는 것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발각된 경우이다. 차법이란 비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빨리울에 의하면 황문黃門(paṇḍaka)·적주자賊住者(theyyasamvāsaka)·외도로 전향한 자(titthiyapakkantaka)·축생(tiracchānagata)·어머니를 살해한 자(mātughātaka)·아버지를 살해한 자(pitughātaka)·아라한을 죽인 자(arahantaghātaka)·비구니를 범한 자(bhikkhunīdūsaka)·파승자破僧者(saṃghabhedaka)·부처님 몸에서 피를 낸 자(lohituppādaka)·이근자二根者(ubhatovyañjanaka)가 차법의 대상이다.⁴¹⁾ 애초에 비구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구족계를 받은 것이니 발각된 시점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당

38) 앞의 각주 35) 참조

39) 본고의 각주 34)와 43)을 참조.

40) 이자랑 2017, 66-91.

41) Vin. I, 85.27-89.21.

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비구가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르고 난 후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바라이 음욕죄를 짓고 바라이학회(波羅夷學悔, Śikṣādattaka-srāmaṇera)의 입장에 있으면서 다시 음욕죄를 저지렀을 경우이다. 바라이학회란 ‘여학사미與學沙彌·진형학회盡形學悔’라고도 불린다. 음욕의 경우에는 교묘하게 유혹당하면 수행의 의지가 있는 비구라도 범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인데, 바라이 음욕죄를 저지른 자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금방 털어놓는다면,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바라이학회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승가에 머무를 수 있다. 바라이학회의 신분에 놓이게 되면, 보통 비구가 누릴 수 있는 35종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참회하며 살아가야 한다.⁴²⁾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멸빈은 아주 한정된 경우에만 부과되는 징벌이었다. 애초에 비구의 자격이 없는 자이거나, 설사 출가했다 해도 음계를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는 내지 다시금 저지르는 자에게만 부과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94년 당시의 멸빈 사유는 정치적인 대립을 전제로 한 상대 세력의 응징이라는 점에 초점이 놓여 있는 것 같다. 개혁회의가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승려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빈의 대상을 보아도 율장의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다.⁴³⁾ 하지만, 멸빈이라는 징벌이 갖는 무게를 고려한다면 대상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좀 더 명확한 내용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⁴⁴⁾

42) 平川彰 1993, 129-131.

43) 승려법 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3.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4.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5.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6. 1회 이상 제적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7.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8.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 <불기 2540(1996).6.22 신설>
(<http://elaw.buddhism.or.kr/jsp/lkms3/jsp/regulation/regulationMain.jsp>)

44)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자랑 2010, 229-232를 참조.

물론 울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탈도첩의 대상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행 승려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⁴⁵⁾ 멸빈이 복적 또는 재득도할 수 없는 가혹한 징벌이라면 비구비구니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죄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죄를 확정하는 명확한 절차 과정의 명문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⁴⁶⁾

V. 결론

이상 94년 개혁종단의 징계와 관련하여 핵심적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점을 울장과 비교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울장이 명확한 원칙 하에 승가의 화합을 중시하며 쟁사를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비해, 개혁회의의 징계 과정은 한쪽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일이 진행되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94년 개혁종단은 4.10승려대회에서 발표한 「종단개혁 선언문」을 기반으로 3대 개혁 과제와 5대 지표 및 그 실천을 위한 세부사업, 10대 실천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⁴⁷⁾ 이를 보면 ‘불교의 자주화’와 ‘종단의 민주화’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3대 개혁 과제에는 ‘인적 청산’이라는 말이, 5대 지표와 실천을

45) 본고의 주34)를 참조

46)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복적 및 대종사 추대 사건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나는 멸빈자의 복권 인정 여부이다. 울장에 의하면, 멸빈자의 복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출가도 금지된다. 현재 종단의 종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어떠할까? 실제로 서 전원장은 94년 ‘당시 징계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 다시 열린 재판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크게 감형 받으며 이후 복권에 성공한다. 즉 당시의 징벌 과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복권한 것이다. 당시 정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겠지만, 만약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어떠할까? 울장에 의하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 갈마는 재갈마가 가능하다. 94년 당시의 징계 과정에 명확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서 전원장뿐만 아니라 함께 멸빈 당했던 다른 승려들도 재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멸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범의 명문화와 실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확보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서 전원장 사태와 같은 혼란은 예견된 일이다.

47) 『백서』 2016, 179-181.

위한 세부사업에는 ‘청정교단의 구현’이라는 과제 안에 ‘해종 행위자 정화’가 들어가 있는 등, 승가 화합을 적극적으로 고민한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이로 인해 94년 종단개혁은 현대적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과 교육, 포교 등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개혁 과정에서도 그 후에도 승가라는 공동체가 지녀야 할 최대의 가치인 ‘화합’을 고려하지 못하여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비판에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다.

승가는 일반사회의 공동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율장에서는 승가를 ‘화합승’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승가라는 공동체 생활의 절대적 가치가 화합에 있다는 점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 화합은 반드시 여법한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율장에서는 모든 쟁사를 정해진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자 한다. 물론 원칙만으로 100%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의 준수 하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자의적인 원칙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본고의 고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94년 당시의 징계 절차나 해결법은 지금 조계종단의 법령집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권석심판의 용인이나 멸빈 대상에 대한 조항 등이 그에 해당한다. 반드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Vin = Vinayapiṭakam, PTS

Smp = Samantapāsādikā, PTS

T = 大正新修大藏經

『사분율』 T1428

『십송률』 T1435

『오분율』 T1421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AONO, Michihiko (青野道彦). 2020. 『バーリ佛教戒律文獻における懲罰儀禮の研究』 [*A study on the disciplinary procedures in the Pāli vinaya texts*], Tōkyō: 山喜房佛書林(Sankibo Busshorin).

The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Promotion Committee of Jogye Order's Administrative Headquarters for 1994 Reform Buddhist-Work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6. 『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94년 종단 개혁 백서』 [*The 2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Promotion Committee of Jogye Order's Administrative Headquarters for 1994 Reform Buddhist-Work*], Seoul: 대한불교조계종 출판사 (Jogye Order Publishing).

KIM, Kwang sik (김광식). 2005. 「근·현대불교와 승려대회」 [“*Modern and Contemporary Buddhism and Monk’s Convention”], 『僧伽和合과 韓國佛教의 未來』(*The harmony of Saṃgha and the future of Korean Buddhism*), Seoul: 헤민기회 (Hyemin gihoek), 141-172.

_____. 2012. 「민주화 운동기(1980~1994)의 불교와 국가권력」 [“Buddhism and State Power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Period (1980~1994)”], 『대각사상』 (*Maha Bodhi Thought*), vol. 17, 169-207.

- KIM, Sunsuk (김순석). 2013.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개혁종단의 성립과 의의」 [“Establishment and Significance of the Reform Order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 1994”], 『대각사상』 (*Maha Bodhi Thought*), vol. 20, 327-359.
- KWON, Oyoung (권오영). 2014. 「해중 행위자 징계」 [“Discipline for those who harm the Order”], 《법보신문》 (Beopbo-Sinmun), Oct. 8. 2020.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54>.
- DEOGSAN (덕산). 2005. 「승쟁에 대한 석존의 교계와 4·10 승려대회」 [“The Buddha’s Teachings on the Conflict of the Saṃgha and the April 10 Monk’s Convention”], 『僧伽和合과 韓國佛教의 未來』 (*The harmony of Saṃgha and the future of Korean Buddhism*), Seoul: 헤민기획(Hyemin gihok), 175-324.
- _____. 2011. 「조계종의 징계제도와 그 문제점」 [“The Jogye Order’s Disciplinary System and its Problems”], 『계율 연구 논문집』 (*A collection of Buddhist Precepts Research Papers*), Seoul: 정우서적(Jungwoo Books), 297-346.
- _____. 2018. 「94년 4·10 승려대회의 결의와 종단개혁 청사진」 [“The Resolution of the April 10, 1994 Monk’s Convention and the Blueprint for Religious Reform”], 『曹溪宗團의 改革과 淨化의 諸問題』 (*Problems of Reform and Purification of Jogye Order*), Seoul: 중도(Jungdo), 267-332.
- SON, Söng u (Deogmun) (손성우(덕문)). 2013. 「율장의 징계갈마와 호계원법」 [“The Disciplinary karma of Vinaya Pitaka and the Law of Hokyewon”], 『대각사상』 (*Maha Bodhi Thought*), vol. 19, 43-77.
- LEE, Ja rang (이지랑). 2003. 「惡見 주장자에 대한 불교 승단의 입장 (1) -‘惡見違諫戒’와 ‘不捨惡見거죄갈마’를 중심으로」 [“A Stance of Buddhist Saṃgha on the Claimer of False Opinion (1)”], 『대각사상』 (*Maha Bodhi Thought*), vol. 6, 197-227.
- _____. 2010. 「율장에 근거한 조계종단 징계 제도의 개선 방향-승려법·호계원법을 중심으로」 [“Directions in the Improvement of the Disciplinary System of the Jogye Order Based on the Precepts Collection(律藏)-Focused on the Monk Law and the Adjudication Board Act of the Jogye Order-”], 『불교학보』 (*Bulgyo Hakbo*), vol. 54, 223-253.
- _____. 2012.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yebhuyyasikā)을 통해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

- [“The idea of Settling Disputes within the *Samgha* by Majority Rule (*Yebhuyyasikā*) of the *Adhikaraṇasamathakkhandhaka*], 『선문화연구』 (*Studies of seon culture*), vol.12, 1-41.
- _____. 2018. 「단사인(斷事人) 제도와 승가 분쟁 해결의 원칙: 제2결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Ubbāhikā*(斷事人) System and the Principle of *Samgha*’s Dispute Resolution: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ouncil of *Vesālī*”], 『불교와 사회』 (*The Journal of Buddhism and Society*), vol. 10-1, 131-160.
- CHO, Ki ryong (조기룡). 2018. 「대한불교조계종 개혁종단의 이념 정체성과 승가교육의 정향」 [“Ideological Identity of the Reform Order within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the Educational Orientation for the Community of Monks and Nuns”], 『선학』 (*Journal of Seon Studies*), vol. 50, 9-40.
- CHA, Cha seok (차차석). 2012. 「조계종 종법에 나타난 징계제도와 율장의 비교 고찰」 [“The Study on the Difference of the Punishment Rules between the Law of the Jogye Order and the Vinaya Pitaka”], 『선문화연구』 (*Studies of seon culture*), vol. 13, 201-226.

A Review from Buddhist Precepts about Disciplinary Procedures of the Reform Order

Lee, Ja-rang
Professor of Humanities Korea Project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that the Reform Order, which appeared in 1994, showed in the process of punishing then-existing forces in the light of the *Vinayaṭaka*. The impatient and harsh disciplinary punishments against some monks who did not support reform forces at the time is a representative issue that still hinders the harmony of the Saṃgha and creates conflicts. In this paper, the following three points, which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in the disciplinary process of the 1994 Reform Order, are reviewed in light of the rules of the *Vinayaṭaka*.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National Monk Convention that was held on April 10, 1994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ōm sūngga jongdan gaehyōk ch'ujinhoe (凡僧伽宗團改革推進會). The Monk Convention is implicitly regarded to have extra-legal authority,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Buddhism. Second, there is the issue of the default judgment. In the process of th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opposing groups at the time, the Reform Order issued a judgment without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s. The third is an eternal expulsion (褫奪度牒, 滅擯). At that time, a total of five monks were given a severe punishment called Ch'et'al toch'ōp. This is a punishment that completely deprives a monk of his status, the heaviest punishment among those that can be imposed on a *bhikṣu* or a *bhikṣuṇī*. By examining these three issues in the light of the *Adhikaraṇa-samathā dhammā* (滅諍法) in the *Vinayaṭaka*, I would

like to clarify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discipline of the Reform Order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Keywords

4.10 Monk Convention, Restricted committee, Judgment by default, Procedure of presence, Eternal expulsion, the Reform Order,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2021년 08월 02일 투고

2021년 09월 21일 심사완료

2021년 09월 22일 게재확정